

#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99
----------	-----

제출년월일 : 2023. 10.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 변경
  - 사업기간 : (변경전) 2020. 1. ~ 2023. 12.  
(변경후) 2020. 1. ~ 2025. 12.
  - 사업위치 : (변경전) 평창읍 중리 31-4번지 외 20필지, 노람뜰 일원(군유지)  
(변경후) 대화면 신리 2018번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부지)
  - 사업규모 : (변경전) 연면적 - 2,950㎡, 사업부지 - 13,314㎡  
(변경후) 연면적 - 2,950㎡, 사업부지 - 7,822㎡
  - 변경사유 : 전문성 확보 및 군비 절감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변경
  - 사업비 : 110억원(도비 81, 군비 29)

## 3. 붙임자료

- 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나. 2023년도 제4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나]

## 2023년도 제4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건물취득 합계			-	-			
소계 (1건 1동)			-	-			
1	답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	△2,950	△11,000,000	2023	평창 수학아카데미 아 건립사업 (변경 전)	
	대	대화면 신리 2018번지	2,950	11,000,000	2025	평창 수학아카데미 아 건립사업 (변경 후)	

[붙임 다]

## 균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변경)	인재육성과	6

- 관내 청소년의 활동 및 교육 여건 개선, 관외 청소년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비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경 추진 필요

## □ 사업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2020 ~ 2023	2020 ~ 2025
사업위치	평창읍 중리 31-4번지 외 20필지, 노람뜰 일원	대화면 신리 2018번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부지 내
사업규모	연면적 2,950㎡(지상3층), 부지면적 13,314㎡	연면적 2,950㎡(지상3층), 부지면적 7,822㎡
사업비	110억 원 (도비 81, 군비 29)	110억 원 (도비 81, 군비 29)
사업내용	청소년 체험특화시설(생활 속 수학원리 체험 전시관) 건립	

## □ 추진사항

-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 9.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9. 3.
- 2020년 1차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0. 2.
-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 2021. 10.
- 건축 및 전시설계 착수 및 준공 : 2021. 7. ~ 2022. 12.
-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심의·의결(위치, 사업비 등 변경) : 2022. 9.
- 평창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업 추진 재검토) : 2022. 12.
- 여건 변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23. 2.
- 도 여성청소년가족과 변경승인 협조 요청 : 2023. 4. 20.
- 사업위치변경 관련 서울대 평창캠퍼스 협의(6회, 참여의향서 회신) : 2023. 4. ~ 8.
- 변경 추진 평창읍 주민 설명 : 2023. 7. 25.
-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변경 승인 : 2023. 8.
- 수학아카데미아 사업 이전에 따른 평창읍 노람뜰일원 대체 사업 방안 논의(평창읍 및 정책담당관) : 2023. 9.
- 2023년도 제8회 평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원안의결 : 2023. 10.

## □ 검토사항(필요성)

- 수학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청소년 특화체험 시설을 건립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단위·가족 단위의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 필요
- 평창읍 청소년들의 높은 접근성과 노람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창읍 31-4 일원에서 사업추진 중이었으나, 수학분야 위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 군비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변경 추진하고자 함.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신규 건립)

구분	시설명	위치	연면적	규모	사업비	비고
변경전	평창수학아카데미아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	2,950㎡	지상3층	11,000 (도8,100) (군2,900)	부지면적 13,314㎡
변경후	평창수학아카데미아	<u>대화면 신리</u> <u>2018번지</u>	2,950㎡	지상3층	11,000 (도8,100) (군2,900)	<u>부지면적</u> <u>7,822㎡</u>

## □ 향후계획

- 군관리계획 중복시설(청소년수련시설) 변경 : 2023. 11.
- 설계 변경 및 소규모 용역 실시 : 2023. 11.

## □ 지적도



## □ 위치도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